

의안번호	제293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2. 7. 5.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제3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6조·제7조)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8조~제16조)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및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17조·제1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

③ 도지사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경제통상국장

3. 보건복지국장

4. 환경산림국장

5. 균형건설국장

6.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심의 안건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협력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및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22.7.5.)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위기환경 극복을 추구하여 우리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

2. 비용 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변경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 지속가능 점검 및 평가 등에 따른 위원회 비용

3. 관련조문

- 안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 안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안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안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 추계는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359.2백만원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전략 20년주기, 계획 5년 주기) : 150백만원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비(2년 주기) : 100백만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매년) : 109.2백만원
 - 정기회의 1회 및 임시회의 등 6회(30명×연7회×130천원) : 2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150	27.3	77.3	27.3	77.3	359.2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50	0	0	0	-	150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서 작성	-	0	50	0	50	100
위원회 참석수당	-	27.3	27.3	27.3	27.3	109.2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50,000	27,300	77,300	27,300	77,300	359,200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50,000	0	0	0	0	150,000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서 작성		0	0	50,000	0	50,000	100,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0	27,300	27,300	27,300	27,300	109,2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6. 작성자 :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장 강창식